



한서대학교

**2020학년도 재외국민
신입생 특별전형 모집요강**

한서대학교 입학관리처

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구분	모집학과		학과정원	모집인원
항공융합학부	글로벌언어협력학과	영어전공	86	
		중국전공		
		일본전공		
		국제협력전공		
	공항행정학과	홍보전공	50	
		행정전공		
	항공조종전공		20	
	항공보안시스템전공		22	
	항공정비전공		30	
	항공컴퓨터전공		20	
인프라시스템학과	항공전기전공	95		
	항공환경전공			
	공항토목전공			
	공항건축전공			
항공신소재화학학과	신소재전공	50		
	화학공학전공			
항공학부	항공소프트웨어공학과		55	9명
	항공기계학과		40	
	항공전자공학과		35	
	무인항공기학과	무인항공기시스템전공	50	
		드론응용전공		
	항공산업공학과		25	
	항공교통물류학과	항공교통학전공	60	
물류학전공				
보건학부	의료복지공학과		25	
	물리치료학과		40	
	작업치료학과		40	
	방사선학과		40	
	간호학과		60	
	치위생학과		40	
	보건상담복지학과		70	
	피부미용화장품과학과		41	
	바이오식품의과학과		45	
	해양바이오산업학과		20	
디자인·엔터테인먼트학부	디자인융합학과	의상디자인전공	125	
		시각디자인전공		
		공간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영상애니메이션학과		35	
	영화영상학과		20	
	문화재보존학과		25	
실용음악과		20		
미디어문예창작학과		25		
융합교양학부	호텔카지노관광학과		30	
스포츠학부	경호비서학과		35	
	레저해양스포츠학과		60	
항공학부	항공관광학과(승무원양성)		70	5명
	항공운항학과(조종사양성)		50	2명
	헬리콥터조종학과		25	2명
합계			1,579	18명

※ 재외국민 중 전 교육과정 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은 위 모집인원과 관계없이 모집인원 제한없이 정원외로 모집합니다.

2.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2019. 7. 1(월) ~ 5(금)	1. 온라인 공통원서접수 http://www.jinhakapply.com 2. 방문접수 : 우리 대학교 입학관리처	방문 및 온라인 접수, 마감일 17:00까지
면접전형 일정	2019. 7. 17(수)	우리 대학교 지정장소	신분증 지참
합격자 발표	2019. 11. 15(금)	우리 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http://helper.hanseo.ac.kr
합격자 예치금 등록기간	2019. 12. 11(수) ~ 13(금)	전국 국민은행	
총원합격자 발표	2019. 12. 19(목)까지	개별통보	
미등록 총원 등록마감	2019. 12. 20(금)	전국 국민은행	
등록금 납부 기간	2020년 1월중	전국 국민은행	개별 안내

※ 면접대상자는 영주교포 자녀 지원자, 해외근무 재외국민 지원자, 기타 재외국민 지원자(자영업, 현지법인), 항공관광학과 지원자(모든 전형)

※ 항공조종전공, 항공운운학과, 헬리콥터조종학과 지원자는 항공종사자 1종 신체검사 증명서(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1부, 항공신체검사 증명서(화이트카드) 1부)를 10월 18일(금)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항공종사자 1종 신체검사증명서는 2019년 3월 1일 이후 수검한 신체검사에 한하여 인정·적용합니다.
-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상에 “적합” 판정만 인정·적용합니다.

3. 재외국민(영주교포 자녀, 해외근무자의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지원자격

※ 기본학력요건 :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가. 자격기준

구 분	지 원 자 격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비 고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영주교포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2년	-	2년	2년	2년	2년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 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해외근무 상사직원 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중 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유치과학 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자영업 현지법인	학생이 외국 소재 고교 과정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이수한 자(비 연속시 3년 이상)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나. 심사기준

- 1) 재학기간의 기준 : 학년(Academic Year) 기준이며,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의 고등학교과정(2년 전체) 또는 고등학교과정(1년)을 포함하여 계속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함.
 - 단,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재학한 것으로 간주
 - 재학기간은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연도가 아닌 학기 기준으로 적용
(예 : 중고과정 연속 3년 이상 → 2학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6학기 이상,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9학기 또는 12학기 이상 등)
- 2) 부모의 근무기간, 거주(영주)기간, 체류기간 : 역년(Calendar Year)과 학년(Academic Year)을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해외거주기간 :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상에 기재된 기간
 - 해외체류기간 :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해외영주기간 :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해외근무기간 :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 3) 해외근무자의 범위
 - 공무원의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단, 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4) 해외근무자의 근무 형식: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 5)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을 재학하고, 국내 고등학교로 신입학한 경우는 재외국민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재외국민(전 교육과정 이수자) 자격기준

가. 자격기준

구 분	지원 자격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비 고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12년	12년	12년	-	-	-	-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자

나. 심사기준

1) 전 교육과정

-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연속하여 전부 이수하여야 합니다.
- 단, 해당 국가의 교육과정이 12년 미만일 경우, 12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초·중등학교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으로 인정됩니다.(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
- 12년 교육과정 중 국내 학교에 조금이라도 재학한 사실이 있으면 자격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되거나 중복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2) 보호자 등의 조건

-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의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국적 및 해외에서의 거주·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20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공통 지원자격 변경 안내】

구분	2020학년도 까지	→	2021학년도 이후
학생 이수기간	고교 1년 포함 중·고교과정 연속 2년(비연속은 통산 3년) 이상	→	고교 1년 포함 중·고교과정 3년 이상
체류기간	학생 : 학생 이수 기간 부모 : 학생 이수 기간	→	학생 :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부모 :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정원의 2% 선발) 전형의 지원자격을 표준화함

- 학생 이수기간은 3년 이상으로, 체류기간은 학생의 경우 이수시간의 3/4 이상, 부모의 경우 2/3 이상으로 설정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함)

※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가 변경될수 있으니, 반드시 2021학년도 모집요강을 확인

5. 재외국민(북한이탈주민) 자격기준

가. 자격기준

구 분	지원 자격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비 고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 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통일부 확인			-	-	-	-	-	

나. 심사기준 :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 통일부장관은 학력인정신청서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송부
- 교육부장관은 이를 송부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
-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는 졸업한 초·중등학교 소재 국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6. 재학기간 인정기준

가. 외국의 학제

- 외국 학교의 교육 연한은 우리나라 현행 초·중·고·대(6-3-3-4) 학제를 기준으로 하며, 초·중·고의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의 경우 부족한 기간은 당해 국 대학과정을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 외국과 우리나라의 학제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대학 과정과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재학기간을 산정합니다.

나. 외국에서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

-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합니다.

다. 제 3국 수학

- 부모 근무국의 지역, 종교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는 부모의 근무 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라. 지원을 위한 자격 인정 기준 시점은 학기 개시 이전일(2020년 2월 28일)로 합니다.

7.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영주교포 자녀	① 본 대학교 소정양식의 입학원서(온라인 접수 시 미제출)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교 성적증명서(국내학교 및 재외 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④ 초·중·고교 재학(사실)증명서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에 재학기간이 명시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⑤ 주민등록말소등본(호(제)적 등본) ⑥ 출입국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⑦ 영주권 사본(부, 모, 학생) ⑧ 재외국민 등록부등본(부, 모, 학생) ⑨ 학력조회 동의서 ⑩ 항공신체검사증명서(항공조종전공, 항공운항학과, 헬리콥터조종학과 지원자) -국토교통부 지정병원에서 발급된 신체검사증명서, 신청서	
해외근무 재외국민	① 본 대학교 소정양식의 입학원서(온라인 접수시 미제출)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교 성적증명서(국내학교 및 재외 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④ 초·중·고교 재학(사실)증명서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에 재학기간이 명시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⑤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⑥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⑦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⑧ 재외국민 등록부등본(부, 모, 학생) ⑨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⑩ 해외지사 설치인증 허가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본(상사직원 자녀) ⑪ 정부초청 또는 추천서(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⑫ 학력조회 동의서(교육부인가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제출 생략) ⑬ 항공신체검사증명서(항공조종전공, 항공운항학과, 헬리콥터조종학과 지원자) -국토교통부 지정병원에서 발급된 신체검사증명서, 신청서	필요시 제출서류를 추가징구 할 수 있으며, 외국어(영어포 함)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자영업 현지법인	① 본 대학교 소정양식의 입학원서(온라인 접수시 미제출)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교 성적증명서(국내학교 및 재외 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④ 초·중·고교 재학(사실)증명서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에 재학기간이 명시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⑤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⑥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⑦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⑧ 재외국민 등록부등본(부, 모, 학생) ⑨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⑩ 해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현지법인 근로자, 자영업자 제출) ⑪ 사업소득세 납입증명서(사업체명 명시, 지원자격 기간내 납부내역 모두 제출) ⑫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소득세 납부이력(현지법인 근로자) ⑬ 학력조회 동의서(교육부인가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제출 생략) ⑭ 항공신체검사증명서(항공조종전공, 항공운항학과, 헬리콥터조종학과 지원자) -국토교통부 지정병원에서 발급된 신체검사증명서, 신청서	

구분	제출서류	비고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① 본 대학교 소정양식의 입학원서(온라인 접수시 미제출)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교 성적증명서(국내학교 및 재외 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④ 초·중·고교 재학(사실)증명서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에 재학기간이 명시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⑤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⑥ 재외국민 등록부등본(학생) ⑦ 학력조회 동의서 ⑧ 학제 확인서(해당국가의 학제가 12년 학제가 아닌 경우) ⑨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1부 ⑩ 항공신체검사증명서(항공조종전공, 항공운항학과, 헬리콥터조종학과 지원자) -국토교통부 지정병원에서 발급된 신체검사증명서, 신청서	필요시 제출서류를 추가징구 할 수 있으며, 외국어(영어포 함)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북한이탈 주민	① 본 대학교 소정양식의 입학원서(온라인 접수시 미제출)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③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④ 학력확인서(해당자에 한함) ⑤ 항공신체검사증명서(항공조종전공, 항공운항학과, 헬리콥터조종학과 지원자) -국토교통부 지정병원에서 발급된 신체검사증명서, 신청서	

※ 외국에서 발급 받은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해당 국가에 소재한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 확인 또는 해당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학교의 성적증명서, 졸업(예정) 증명서는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날인” 및 “재외국교육기관확인서”를 발급 받아 서류 접수 기간 내에 제출(아포스티유 협약국은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로 “재외국교육기관확인서” 대체가 가능/재외교육기관확인서가 존재하지 않는 일부 국가 제출 제외)
-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재외한국학교는 영사 확인 없이 증명서(한국어) 원본제출

※ 학제 미달로 대학의 이수기간을 포함하여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고등학교 및 대학의 학력조회 동의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학교 주소 및 연락처 등 판독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입력)

※ 전 교육과정 이수자의 학제 확인서는 해당국가의 정부기관 또는 재외공관에서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어(영어포함)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어 번역·공증 미비서류는 서류 미제출 불합격 처리)

8. 전형유형별 성적반영 비율

전형유형	모집단위	반영비율(%)	총점
		면접	
영주교포 자녀	전학과	100	1,000
해외근무 재외국민			
자영업, 현지법인			
전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항공관광학과	100	1,000

※ 북한이탈주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 지원자(서류심사 합격자)는 서류 전형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단, 모든 전형의 항공관광학과는 면접고사를 실시합니다.)

※ 모집인원 및 성적에 관계없이 수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면접고사 인성 예상문항은 면접 전형 일주일전 공개될 예정입니다.

9. 면접고사

가. 기준 및 방법

면접 기준	평가 방법	비 고
인성 평가	다대다 구술면접	■ 최고점 : 1,000, 최저점 : 160

나. 면접 복장은 일반 평상복 등 단정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다. 항공관광학과 면접 복장

- 상의 : 색상, 형태 등은 자유이나 목을 가리는 옷은 금지합니다.
- 하의 : 여자의 경우는 가능한 스커트 차림으로 무릎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스타킹은 밝은 색 착용)
- 신발 : 슬리퍼를 착용하고 면접을 실시합니다.(슬리퍼는 학교 제공)

라. 면접고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대리응시자 또는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마. 준비물 : 수험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10. 신체검사

가. 대상 : 항공조종전공, 항공운항학과, 헬리콥터조종학과 지원자 전원

나. 대상 신체검사 : 항공종사자 1종 신체검사

다. 검사기관 : 국토교통부 지정 의료기관(별도의 지정병원 없음)

라. 검사 기간 : 2019년 3월 1일 이후 수검한 결과

마. 제출서류 :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1부, 항공종사자 1종 신체검사증명서 1부

바. 제출 기한 : 2019년 10월 18일(금)까지 도착

사. 적용 기준 :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상에 “적합” 판정만 인정·적용

11. 선발기준

- 가. 면접성적순에 의해 선발하며, 동점자 발생 시 외국학교 재학기간이 긴 학생, 연장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 다. 지원자격 미달자와 합격 범위에 포함된 자라 하더라도 입학전형 성적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 현저히 낮아 입학할 것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학할 수 없습니다.

12. 원서 및 전형료

가. 원서 : 무료

나. 전형료(수수료 포함)

- 영주교포 자녀, 해외근무 재외국민, 기타 재외국민 : 50,000원
- 북한이탈주민,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30,000원
- 모든 모집단위의 항공관광학과 : 50,000원

다. 전형료 환불

-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환불받을 수 없음.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형 응시가 불가능함을 사전에 신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에 따라 전형료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해당 전형료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음.

1) 환불대상(불가항력적인 사유)

- 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나) 천재지변 또는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다)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라)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2) 환불 대상 제외

- 단순변심, 타 대학과의 전형일자 중복 등의 사유로 면접에 불참한 자
- 기타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합격자

13. 원서접수 안내

접수기간	접수장소	연락처	비고
2019. 7. 1(월) ~ 5(금)	· 온라인 공통원서접수 http://www.jinhakapply.com	1544-7715	접수마감일 17:00까지
	· 방문접수(우리 대학교 입학관리처)	041-660-1020	

가. 전형료 결제

- 인터넷 원서접수 업체의 결제 방식을 따르고, 결제계좌(통장, 카드 등)에 전형료 및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나.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 사항

- 최종 원서접수는 전형료 결제를 하고, 접수증 출력이 되었을 경우에만 접수가 완료된 것이므로 전형료 결제 접수증을 반드시 출력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원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전형료 결제 이전에 원서에 기재한 사항을 확인하고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사이트에 회원가입 시 나타나는 약관과 원서접수 시 나타나는 확인 문구를 확인하고, 접수 시 안내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자는 제출서류를 지정된 기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 처리 합니다.

14. 등록 안내

가. 합격자 발표 및 예치금 납부 안내

- 1) 합격자 발표 : 2019. 11. 15(금)
- 2) 등록(예치금 납부) 기간 : 2019. 12. 11(수) ~ 13(금)
※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 포기 처리
- 3) 등록장소 : 국민은행 전국지점
- 4) 합격통지서 및 예치금 고지서 : 입학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5) 잔여 등록금 납부 안내 : 2020년 1월 중 고지서 및 납부기간 개별 통보
- 6) 추가합격 발표 및 등록기간 : 2019. 12. 13(금)이후 예비순위에 따라 개별 유선 안내

15. 유의사항

- 가.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합격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재학 중이라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 나. 제출서류는 제출기간 내 본 대학교 입학관리처에 접수되어야 하며, 우편 접수자는 서류접수 여부를 본 대학교 입학관리처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 서류심사 후 부적격 통보를 받은 지원자는 부적격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반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최종등록자 중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는 2020년 3월 13일(금)까지, 졸업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입학관리처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제출서류 상의 이름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 법원의 동일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해당 국가 기관의 증명 서류도 가능).
- 바. 항공관광학과는 항공승무원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이므로 각 항공사의 승무원 선발 기준(생년월일 등)과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고려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사. 항공조종전공, 항공운항학과, 헬리콥터조종학과 지원자는 국토교통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원본을 10월 18일(금)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1부, 항공신체검사 증명서(화이트카드) 1부)
- 아. 항공학부, 항공융합학부의 일부 학과는 색맹, 색약인 경우 졸업 후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자는 지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 그 외의 사항은 본 대학교 입학전형 절차와 규정에 따릅니다.
- 차. 합격한 학생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불가능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입국하여 한국어 연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카. 입학 후 제반 사항은 우리 대학교 학칙에 따르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16. 2020학년도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수험생 유의 사항

가. 복수지원 금지

- 1)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총원합격자 포함)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2)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의 정원외 전형도 포함됨)
- 3)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 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 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에는 복수지원할 수 없습니다.
 - 산업대, 전문대는 모집기간군의 제한 없음
- 4)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5)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총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하여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산업대, 전문대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에 지원가능 합니다.
- 6)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포함)·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별법에 의한 설립대학 : 경찰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종합예술대학 등
- 7)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합니다.

나. 이중등록 금지

- 1)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해야 합니다.
- 2)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서도 다수의 대학에 납부(1개 대학에만 납부하여야 함)할 수 없습니다.
 - 수시모집 예치금을 납부하는 것은 대학에 등록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예치금 납부 이후 이에 대한 사실을 포기할 수 없음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한 수험생은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사실을 취소할 수 있음
- 3)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색·분석하여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지체 없이 무효로 처리합니다.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총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총원합격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사실을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17. 입학문의

- 우편번호 : 31962
- 주 소 :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46 한서대학교 입학관리처
- 전 화 : (041) 660 - 1020 · 전 송 : (041) 660 - 1024
- 입학홈페이지 : <http://helper.hanseo.ac.kr>